

# 국세청 전자문서 다운로드 매뉴얼

## 1. 홈택스 홈페이지(<https://www.hometax.go.kr>) 로그인



① 로그인 후, 'My 홈택스' 메뉴로 접속

② 연말정산·지급명세서 선택 →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



## 2.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자료 조회



조회/발급

민원증명

신청/재출

신고/납부

상담/재보



### 소득·세액공제 자료 조회

귀속연도 **2024년**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월 해제

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**상세보기**

내려받을 인쇄할 문서에 개인정보를  공개안함  공개함

내려받을 문서에 비밀번호를  설정안함  설정함

**내려받기** 인쇄하기 점자받기

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건강/고용보험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국민연금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보험료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의료비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교육비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신용카드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직불카드 등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현금영수증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개인연금저축/연금계좌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주택자금/월세액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주택마련저축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장기집합투자증권지속/ 벤처기업투자신탁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기부금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	장애인증명서 <a href="#">조회하기 Q</a>

**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전에 꼭 확인** 해주세요!

- 최종자료는 1월 20일부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·수정 제출한 자료를 제공해요.
-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해요.
- 조회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셔야 해요.
-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 주세요.
-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해요.
- '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)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명단을 올해부터 처음 제공해요
- 위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의료비·교육비·보험료 외에 제공하지 않아요.
- '23.12.31. 이전에 사망한 부양 가족의 자료는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 항목에는 제공하지 않아요.

### ① 귀속연도는 반드시 2024년으로 설정

( '25.1.15일부터 '24년 소득공제자료 확인 가능)

※ 과세기간 중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 이후 해당 월만 체크

단, 과세기간 24년 기준 종전근무지가 있는 경력입사자의 경우 제외

### ② 항목별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하여 자료가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

### 3.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

#### 3-1.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전

##### 공제신고서 작성

- 본 서비스는 간소화 자료의 공제항목과 부양가족으로만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
  - 세대주, 대한민국 국적,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후, [공제신고서 수정하기]로 이동하여 Step.기본사항 입력에서 관련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
- 공제대상임에도 선택이 안된 자료가 있거나 잘못 선택한 경우, 간소화 자료를 다시 조회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는 회사가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.
  - 회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, 근무처 선택 목록에 회사명이 보이지 않습니다.

근무처 선택: 해당없음    총급여: 0 원

**공제신고서 작성**    작성한 공제신고서 보기    닫기

※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(근무처, 총급여를 입력하지 않아도 공제신고서 작성 가능!)

## 4. 공제신고서 작성 전 부양가족 확인

공제신고서 작성하기

Step.01  
부양가족 입력

Step.02  
공제신고서 내용 확인

- 현재 조회되고 있는 부양가족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대상자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입니다.
- 명단에 있는 부양가족 외에 추가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「전년도 부양가족 추가」 또는 「부양가족 추가」 버튼을 눌러 개별적으로 추가하고,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 삭제할 수 있습니다.

최민석님 | --

부양가족 입력

※ 신청을 합니다

요약설명 및 공제요건 펼쳐기

부양가족(인적)공제 명세

부양가족 추가

전년도 부양가족 추가

선택삭제

관계	내외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	기본공제	추가공제			자녀세액공제		
						부녀자	한부모	경로우대	장애인	자녀(기본)	출산입양
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자 본인	내국인			N	Y	N	N	N	N	N	N
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	내국인			N	N	N	N	N	N	N	N
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자의 직계존속	내국인			N	N	N	N	N	N	N	N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소득자의 직계존속	내국인			N	N	N	N	N	N	N	N
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의 직계존속	내국인			N	N	N	N	N	N	N	N
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비속(자녀 및 손자)	내국인			N	N	N	N	N	N	N	N
<input type="checkbox"/> 직계비속(자녀 및 손자)	내국인			N	N	N	N	N	N	N	N
<input type="checkbox"/> 배우자의 직계존속	내국인			N	N	N	N	N	N	N	N

※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요건(나이 및 소득 요건)을 충족하는 경우 <기본공제>를 'Y'로 선택하시고 <추가공제> 여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

저장 후 다음이동

① 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이 포함되어있다면 삭제처리

② 공제대상자의 공제명세(기본공제 N or Y / 추가공제(경로우대,장애인,자녀공제 등) 확인해

Y or N 으로 다시한번 확인기입



## 5. PDF 다운로드 및 이메일 or 서면 발송

인기검색어 2. 연말정산간소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. My홈택스 전체메뉴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

전자(세금)계산서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 국세증명·사업지등록 세금관련 신청/신고 세금신고 납부 고지·환급 지급명세서 자료제출·공익법인 장려금·연말정산 전자기부금 상담·불복·고충 제보·기타 세무대리 납세관리

My홈택스

공제신고서 작성하기

Step.01 부양가족 입력 Step.02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

-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의 지출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「예상세액 결과보기」에서 소득·세액공제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작성 완료한 공제신고서는 출력 또는 PDF로 제출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정문재님 | --

새로 작성하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간편제출하기

기타서류 첨부 **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** 공제신고서 출력 예상세액 결과보기 설문조사 가기

공제신고서 내용 확인

공제 신고서	연금저축 등 소득·세액 공제명세	월세액·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	의료비 지급명세	기부금 명세	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
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

① 공제신고서 다운로드 및 이메일 발송

② 이메일 주소: dbsw06521@daum.net (6521은 전부 숫자)

③ 서면발송 주소: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98, 신우빌딩 7층 연말정산담당자 앞

## - 공통 유의 사항

### ①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제출자료에서 제외

본인이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은 체크하지 마시고,  
공제요건을 만족하는 항목들에만 체크하시어 인쇄하십시오.

특히, 주택자금/주택마련저축의 경우 국세청 소득공제 증명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 
요구되는 모든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**(※ 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 부당공제에 해당! 국세청에 의해 반드시 적발되며, 추후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세금 추징!)**

주택자금의 경우, 세대의 주택보유수(무주택 혹은 1주택 보유), 주택 규모  
(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), 주택 가격 등 여러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 
공제가 가능합니다.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게시판을 통해  
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